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보도 일시 | 배포 즉시              | 배포 일시 | 2022. 11. 18.(금)       |
| 담당 부서 | 근로감독정책단<br>임금근로시간과 | 책임자   | 과 장 이지영 (044-202-7994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  | 서기관 조아라 (044-202-7543) |

## **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으로 연장근로 등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**

### **1. 주요 기사 내용**

□ 11.18.(금) 매일노동뉴스, 각본대로 결론 낸 미래노동시장연구회 “연장근로 단위 주에서 월 이상으로 확대”

- 하지만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활용하면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장시간 노동을 하되 수당 대신 휴가로 지급하기 때문에 노동자 입장에서는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받을 수 없다. 그만큼의 임금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.

### **2. 반박 내용**

□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연장근로 등을 시간으로 저축하였다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임금 보상이 아닌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

- 11.17.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발제에서도 “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임금 보상이 아닌 휴가로 사용” 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음

□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으로 연장·야간·휴일근로 등에 따른 가산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